# 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심의 • 의결

**안건번호** 제2022-019-168호

안 건 명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대표자

의결연월일 2022. 11. 30.

주 문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할 것

이 유

### I. 피심인의 일반 현황

피심인은

대리점으로「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이며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 < 피심인 일반현황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설립일	상시 종업원 수	
주요서비스		

#### Ⅱ. 사실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위법한 개인정보 처리로 민원이 신고된 의 조사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1.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행위 사실

피심인은 업무를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파일<sup>\*</sup>을 대리점에서 사용하는 클라우드( Cloud)<sup>\*\*</sup> 내에 까지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사실이 있고, 피심인의 해당 위법행위는 현장조사 시 시정 조치가 완료되었다.

\*

\*\*

#### 2.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나, 피심인은 하였다.

# Ⅲ. 위법성 판단

### 1. 관련 법령의 규정

보호법 제21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 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6조제7항은 수탁자에 관하여 제21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 2. 위법성 판단

정산 완료 등 목적 달성 뒤에도 수집한 개인정보 파일을 클라우드(Cloud)에 보관한 피심인의 행위는 보호법 제21조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 Ⅳ. 처분 및 결정

#### 1. 시정명령

목적 달성 뒤에도 수집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21조제1항 위반에 해당하나, 피심인은 보호법 제26조제7항에 따라 과태료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 수탁자이므로 보호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할 것

### V.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1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보호법 제64조(시정조치 등)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행정심판법」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2022년 11월 30일

부위	원장	최 장 혁 (서 명)
위	원	강 정 화 (서 명)
위	원	고 성 학 (서 명)
위	원	백 대 용 (서 명)
위	원	서 종 식 (서 명)
위	원	염 흥 열 (서 명)
위	원	이 희 정 (서 명)
위	원	지 성 우 (서 명)